

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즉시
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신청 내용	기증자의 유형	[] 전체	[] 살아있는 사람	[] 뇌사자	[] 사망한 사람
	기증할 장기등	[] 전체	[] 신장 [] 간장 [] 췌장 [] 체도 [] 심장 [] 폐 [] 소장(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[] 위장 [] 십이지장 [] 대장 [] 비장) [] 손 [] 팔 [] 발 [] 다리 [] 안구 [] 골수 [] 말초혈		
	기증할 조직	[] 전체	[] 뼈 [] 연골 [] 근육 [] 피부 [] 양막 [] 인대 [] 힘줄 [] 심장판막 [] 혈관 [] 신경 [] 심낭		

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와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주민등록번호
기증자와의 관계

〇〇〇 등록기관장 귀하

첨부 서류	장기등 기증 시	1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적출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	수수료 없음
	조직 기증 시	1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조직의 기증 및 채취에 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	